

제225회 임시회
2004. 4. 2(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4년 3월 15일(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18일
- 다. 상정일자 : 2004년 3월 30일(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과 관련하여,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의 2004년도 토요일휴무제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바꾸고,
-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5조의2 제1항),
-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고(안 제15조의2 제2항),
- 관련 조례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함(안 부칙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석규)

-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난 2003. 12. 24 시달한 2004년도 지방교육행정기관 토요일휴무제 시행지침에 의거, 토요일휴무제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토요일휴무제 대상기관 및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처계획,
 - 조례의 제명중 ‘교육감소속’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으로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표기된 조항은 제1조 목적규정에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표기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의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부칙조항을 이용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례개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추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토요일휴무제 및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본 조례의 개정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토요일휴무제 및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문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를 삽입하고,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안 제15조의2 제1항)
- 교육감이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제18조 제1항)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는 부칙 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3월 30일

제안자 : 이기동 의원의

□ 제안이유

- 토요일휴무제 및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본 조례의 개정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토요일휴무제 및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문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를 삽입하고,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 (안 제15조의2 제1항)
- 교육감이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제18조 제1항)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는 부칙 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u></p>	<p><u>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u></p>	<p>(개정안과 같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충청북도교육위원 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u></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u>교육 감은 국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u></p> <p>②<u>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p>	<p>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u>교육감은 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u></p> <p>②<u>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p>	<p>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u>교육감은 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u></p> <p>②(개정안과 같음)</p>
<p>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u>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u></p>		<p>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u>공무원의</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1.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한다.</p> <p>2.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삭 제)</p>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u></p>	<p><u>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u>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u></p>
<p>제15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u>교육감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u></p> <p>②<u>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p>	<p>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u>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u></p> <p>②<u>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p>
<p>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u>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u></p>	<p>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u>공무원</u></p>